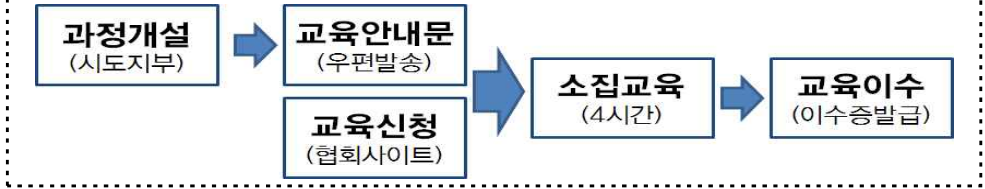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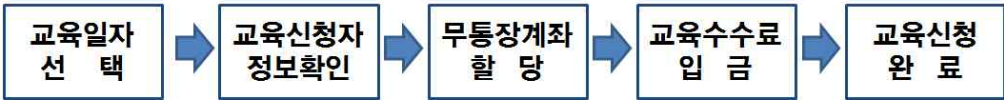
『소방안전관리보조자』실무(선임자) 교육안내

(Ver 17.02)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교육 안내	과정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선임자) 교육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및 자격(첨부 1참조), 선·해임 안내(첨부 2참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관련 근거 : 법 제41조제1항1호 및 제2호</p> <p>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p> </div>																
	교육 주기	<p>선임된 날부터 6개월(3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36조제3항</p> <p>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p> <p>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p> </div>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교육과정</th> <th>교육형태</th> <th>교육시간</th> <th>교육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집합과정</td> <td>소집교육</td> <td>소집 4시간</td> <td>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td> </tr> </tbody> </table> <p>※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업종별) 교육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교육과정(업종)</th> <th>입문반</th> <th>일반반</th> </tr> </thead> <tbody> <tr> <td>교육대상</td> <td>최초 선임자</td> <td>선임경력 2년 미만 (보조자 실무교육 1회 이상 이수자)</td> </tr> <tr> <td>교육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제도 • 화재의 예방·대비 • 초기대응체계 구성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계법령 •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실습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 질의회신 및 화재사례 </td> </tr> </tbody> </table> <p>※ 상기 교육과정은 선임경력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선임경력 무관)</p>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 장소	집합과정	소집교육	소집 4시간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교육과정(업종)	입문반	일반반	교육대상	최초 선임자	선임경력 2년 미만 (보조자 실무교육 1회 이상 이수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제도 • 화재의 예방·대비 • 초기대응체계 구성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계법령 •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실습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 질의회신 및 화재사례
교육과정	교육형태	교육시간	교육 장소															
집합과정	소집교육	소집 4시간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교육과정(업종)	입문반	일반반																
교육대상	최초 선임자	선임경력 2년 미만 (보조자 실무교육 1회 이상 이수자)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제도 • 화재의 예방·대비 • 초기대응체계 구성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관계법령 •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실습 •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 질의회신 및 화재사례 																

<p>교육 흐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안내문 수령 후 협회사이트에서 교육신청하여 교육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안내문 우편발송(시도지부별 일정에 따라 교육실시 10일전까지 발송) 협회사이트에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장소 등 신청(사전접수) 
<p>교육 일정</p>	<p>협회사이트 실무교육 일정참고</p>
<p>교육 참가시 구비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선임된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협회 자격수첩)
<p>교육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관리제도 화재의 예방·대비 초기대응체계 구성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p>※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p>
<p>실무교육 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원 <p>※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p>
<p>실무 교육 이수증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p>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p>	<p>❖ 신용카드 결제</p>  <p>❖ 무통장 계좌 입금</p>  <p>※ 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금기한 : 교육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후 오후 6시까지 (기한 내 미입금 시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fsa.or.kr 접속>소방교육>실무교육>나의 교육신청내역)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지부별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시간 : 09:00 ~ 18:00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2671-9076~8	부산지부(부산 동래구)	051-553-8423~5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2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29-6911,7911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3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2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031-945-3118,4118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055-237-2071~3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7119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81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043-237-3119,4119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063-212-8315~6
	강원지부(춘천)	033-257-0119 033-251-7119	제주지부(제주시)	064-758-8047 064-755-1193

※ 별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선임자격

선임대상 ※근거 : 시행령 제22조의2		선임기준 ※근거 : 시행령 제22조의2	선임 자격 ※근거 : 시행령 제23조 제5항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중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2급,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수료자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3.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 제외)	1명	

* 예외사항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장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 신고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근거	<p>▣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p> <p>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절차	<p>▣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누 가</td> <td colspan="2">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누구에게</td> <td colspan="2">관할 소방서장</td> </tr> <tr> <td rowspan="4" style="background-color: #fff2cc; vertical-align: middle;">선임 및 신고</td> <td colspan="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 text-align: center;">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 text-align: center;">해당일</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td> <td>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td> <td>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2cc;">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td> <td colspan="2">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td> </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관련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 자격증(국가기술자격 및 협회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자격 : 별표 1참조 • 특급, 1급, 2급,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p>	누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선임 및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해당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누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선임 및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해당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벌칙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50조제5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지도·감독 위반자(법53조제7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법53조제3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별첨 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4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호(성명) (용도구분 :)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재지 (전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 바닥면적 m ²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직위	선임일자	
	해임	경력 (총선임기간 :)	최종교육일자 년 월 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해임일자	해임사유			

그 밖 의 필 요 한 사 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력 연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무/ 직위

210mm × 297mm [백상지 80g / m² (재활용품)]